



2005.09.22.

일본 식품분야 수입관리제도

내용문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출통상팀

(02-2194-7453, shinigi@khidi.or.kr)

□ 수입시의 규제 및 수속

(신선 과실의 수입에 대해서는 『식물방역법』 및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음)

○ 식물방역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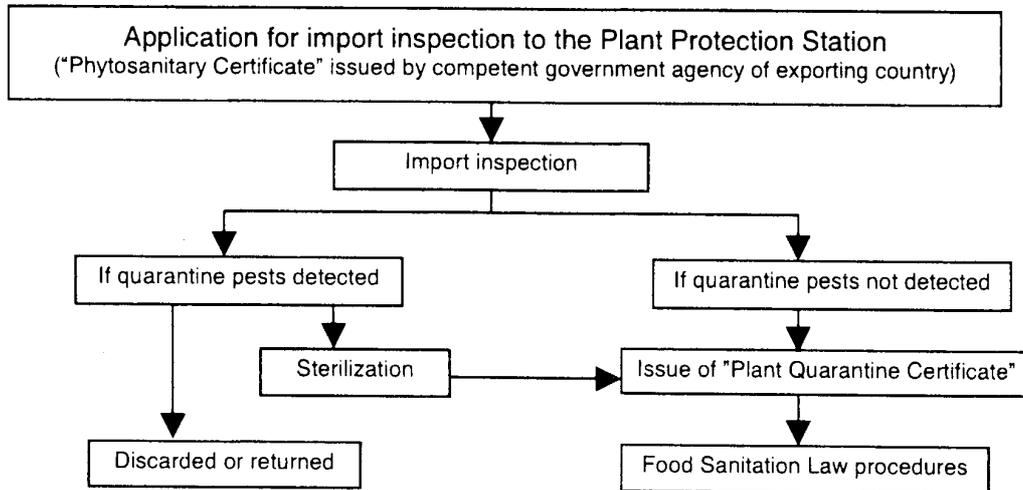
- 식물방역법에서는, 식물에 유해한 병균, 해충, 기생식물 등이 해외로부터 침입, 일본의 농업 등에 피해를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래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음
 - 흙이 묻은 식물
 - 일본에서 아직 발생되지 않은 병충해가 발생하고 있는 나라로부터의 寄主생과실
- 금지 품목은 병해충의 발생 지역마다 정해져 있어 이에 해당하는 과일이 일본에 수입되었을 경우, 소각 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짐
- 신선 과실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검사 증명서(유해충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첨부하고, 『식물수입금지품등 수입검사신청서』를 식물 방역소에 제출하여야 함
- 일본에서는 충분한 식물 방역을 실시할 수 있는 특정 항구와 공항만이 수입함으로써 인정되고 있으며, 검사결과, 유해충이 검출되어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는, 소독·폐기·Shipback 조치하여야 함

○ 식물방역법에 근거한 수입검사(검역) 절차

<조건부수입 輸入禁止 解除品>

- 수입금지가 되어 있는 신선 과실에 대해서, 일본의 식물검역당국과 解禁 요청국 정부기관의 사이에 기술적 협의를 거쳐, 수출국에서 완전한 소독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확립되었을 경우는, 농림수산부 장관이 식물검역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이 조건을 모두 채워지면 수입을 해금함

<수입검사(검역)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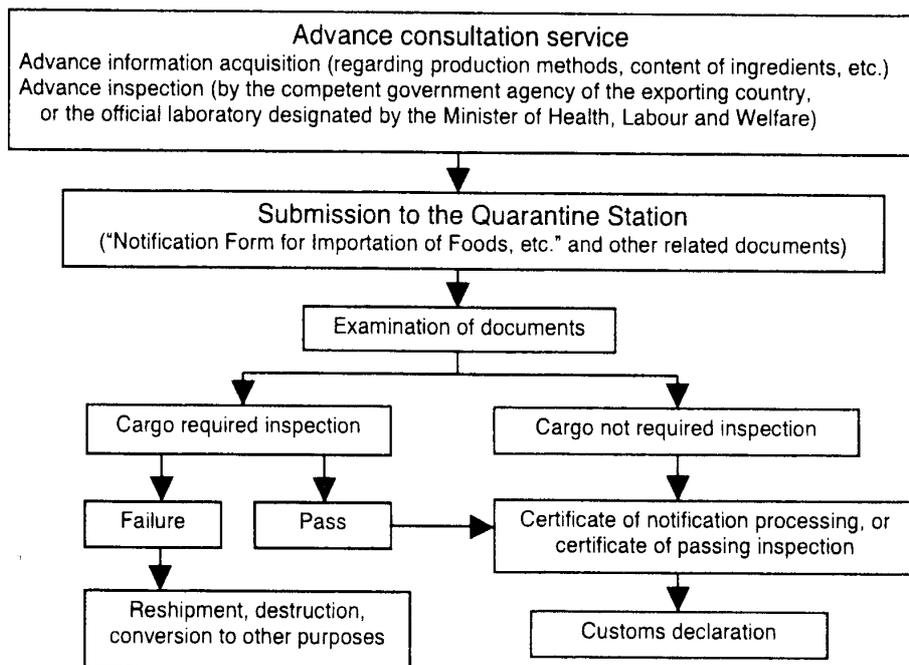
- 현재, 품목 등에 따라 소독의 방법이 다르지만 대개 아래 방법 가운데 하나를 채택하고 있음
 - 증열 처리
 - 저온 처리
 - 증열과 저온의 조합 처리
 - 브롬화 메틸 훈증
- 덧붙여 조건부수입 해금품을 포함한 모든 신선 과실은, 도착시에 식물 검사가 실시되어 검역 해충이 발견되었을 때는 청산가스(폐각충, 영경퀴 말, 코나지라미의 경우)인가, 브롬화 메치르가스의 훈증이 실시됨
- 식품위생법
 - 동법에 규정에 의해, 신선 과실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품등수입신고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한 후, 통관하고자 하는 항구나 공항을 관할 하는 검역소의 수입식품 감시담당 창구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
 - 『수입신고서』의 심사의 결과, 위생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세지역내에서 검사를 하여 수입의 가부를 판정함

- 신선 과실에 대한 위생 검사에서는, 주로 식품첨가물(곰팡이방지제, 피 막제, 착색료등)과 잔류농약의 검사를 함. 곰팡이 방지제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과실의 종류나 잔존량이 규정되어 있으며 피막제나 착색 료에 대해서도 사용 기준이 정해져 있음
- 지정된 이외의 첨가물이 사용되고 있으면, 소각처분 등의 조치가 취하여 지고 잔류 농약에 대해서 과실마다 잔류 기준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산자의 농약의 사용 상황(일본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수확 후의 살포 농약을 포함)을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함
- 사전에 후생노동장관이 지정한 일본내 검사기관, 및 등록되어 있는 국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자주적으로 검사를 해 두면, 그 결과는 검역소가 실시하는 위생 검사와 동등하게 취급되어 그 검사 항목에 대해서는 통관시 위생 검사가 생략되며 수입 수속이 신속히 행하여질 수 있음
- 또, 컴퓨터에 의한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는, 수입수속을 전자화한 『수입 식품 감시 지원시스템(FAINS)』를 이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하드, 소프트를 갖추고, 후생 노동대신에게 신청,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취득하는 것이 필요함

□ 판매시의 규제 및 수속 [식품위생법에 근거]

- 신선 과실의 판매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 「JAS법」, 「부당경품류및 부당표시방지법」의 규제를 받음
- 이 외에 포장용기에 관해서, 식별 표시에 대해서는 「자원유효이용촉진법(자원의 유효한이용의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제를, 재상품화에 대해서는 「포장용기리사이클법(포장용기과관련되는분별수집및재상품화의 촉진등에관한법률)」의 규제를 받음

<판매시의 규제 및 수속>



- 식품위생법
 - 동 법에 따라서, 유해·유독 물질을 함유하는 식품이나 비위생적인 식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음
- JAS법(農林 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 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JAS법에서는, 일반소비자 전용으로 판매하는 모든 음식료품이 품

질표시기준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생선과실에 대해서는 『신선식품 품질표시기준』에 근거하는 표시의무가 지워짐
- 부당 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
 - 판매하는 상품 등의 내용에 대해서, 일반소비자에 우수한 품질이라고 오도하는 과대 광고나 허위 표시등은 부당표시로서 동 법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음
 - 또한, 상품의 원산국을 혼동시키는 표시도 동 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음

□ 관할 정부부처

- 식물 방역법
 - 농림 수산성 생산국 과수 화초과 - TEL : 03-3502-8111(대)
 - 농림 수산성 생산국 식물 방역과 - TEL : 03-3502-8111(대)

□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
 - 후생 노동성 의약국 식품 보건부 기획과 - TEL : 03-5253-1111(대)
- JAS법(농림물자의규격화및품질표시의적정화에관한법률)
 - 농림 수산성 종합 식료국 품질과 - TEL : 03-3502-8111(대)
- 부당 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
 - 공정 거래 위원회 경제 거래국 거래부 소비자 거래과 - TEL : 03-3581-5471(대)
- 자원 유효 이용 촉진법
 - 경제 산업성 산업기술 환경국 리사이클 추진과 - TEL : 03-3501-1511(대)

- 환경성 폐기물·리사이클 대책부 리사이클 추진실 -
TEL : 03-3581-3351(대)
- 농림 수산성 식품 산업 기획과 식품 환경 대책실 -
TEL : 03-3502-8111(대)

□ 표시 방법

○ 법률에 근거할 의무 표시

- JAS법의 『신선식품품질표시기준』에 의해서, 신선 과실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용기나 포장의 보기 쉬운 장소 등 소비자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는 것이 의무임
 - 명칭
 - 원산 국명
- 『자원유효이용촉진법』에 근거하는 표시 : 동 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포장용기에 대해서는 분별 회수 촉진 재의 식별 표시를 하는 것이 의무이고 종이나 플라스틱재를 사용했을 경우, 포장용기의 1개소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식별 마크를 표시할 필요가 있음

<자원 유효 이용 촉진법에 근거하는 표시>



External
packaging



Individual
packaging

□ 법률에 근거하는 임의 표시

○ JAS법에 근거하는 표시

- JAS법에서는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 가공 식품에 대해 『특정 JAS규격』이 정해져 있어 그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등급 설정을 받아 "有機 JAS 마크"를 붙일 수 있고 기타의 것에 대해서는 『유기 xx』, 『오가닉 xx』 등 유기농산물이라고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음
- 외국(JAS 제도와 동등의 인증 제도를 갖는다고 인정되어지는 나라에 한정함)에서 생산된 유기농산물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유기농산물 마크를 표시할 수 있음

<수입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 가공식품의 검사/ 인증제도>

